감 사 원

주 의 요 구

제 목 **2015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**

소 관 기 관 국무조정실

조 치 기 관 국무조정실

내 용

국무조정실은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 및 「국가회계법」 제15조 등의 규정과 「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」(2014. 4. 기획재정부) 및 「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」(2016. 1. 기획재정부)에 따라 기관 임무를 '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·감독,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·갈등 관리,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, 제 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'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'임무-비전-전략목표(2개)-프로그램목표(2개)-단위사업(28개)'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또한,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(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6개, 단위사업 성과지표 71개)를 설정하고,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.

□ 성과지표를 부분적으로 설정

위 관서는 단위사업 Ⅱ-1-일반재정(4) '국가적 중·장기 추진과제 지원'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'특별자치도 성과 목표·지표 개발 및 활용도(%)'를 설정하였다.

(전략목표) Ⅱ.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
(프로그램목표) II-1.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 제고
'사업) II-1-일반재정(4) 국가적 중·장기 추진과제 지원
(성과지표) ③ 특별자치도 성과 목표·지표 개발 및 활용도(%)(목표 달성률 100%)

「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」 II-2-(1) '성과지표 설정'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, 단위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5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단위사업의 주요 내용이 [표]와 같이 '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지원'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4개 사업 중 하나인 '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'만을 대표하는 '특별자치도 성과 목표·지표 개발 및 활용도(%)'로 설정하였다.

[표] 단위사업 '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'의 주요 내용

주요 사업	세부 사업
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지원	- 영어교육도시 - 첨단과학기술단지 - 서귀포관광미항, 헬스케어타운 -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 -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
제주도의 선진적 지방자치분권 실현 지원	- 단일광역행정체제·교육자치·자치경찰 도입
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 조정 노력	- 관계기관 조정 회의 및 국회 요구 크루즈 입·출항 시뮬레이션 시현
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	-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-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

자료: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

그 결과 성과지표가 4개 주요 사업의 성과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1개 사업의 성과만 반영하도록 설정되어 사업의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.

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국무조정실장**은 앞으로 단위사업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**(주의)**